

## I. 수정사항 개요

### 1.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2022년 3월 초에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개정사항이 2차 시험일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개정사항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정오표 공지일인 2022년 6월 7일 현재에도 해당 개정사항이 심의 중에 있으므로, 법률 개정 절차를 고려할 때 회계사 2차 시험일인 2022년 6월 2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의 교재 반영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31일에 주택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요건
  -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 ③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요건
  -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 ③ <삭제>

####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①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개정)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2. 5. 10일부터 2023. 5.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① 세율 : 기본세율(6~45%)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II. 수정사항

### 1. 신용카드소득공제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234	상14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 ④ <b>개정</b>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하7	④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7×10%+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8×10% <b>개정</b>	< 삭 제 >
2-235	상1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40%, 100만원]+Min[대중교통이용분×40%, 100만원]+Min[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100만원]+Min[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10%+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10%, 100만원] <b>개정</b>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40%, 100만원]+Min[대중교통이용분×40%, 100만원]+Min[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100만원]
	상24	7.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5%)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8.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2022년 전통시장사용분-(2021년 전통시장사용분×105%)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삭 제 >  < 삭 제 >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250	하13	(4) 甲의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5,000,000이며, 2021년 전통시장사용분은 ₩2,000,000이다.	< 삭 제 >
2-256	상13	⑤ 2021년 甲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28,000,000이며, 2021년 전통시장사용분은 ₩12,000,000이다.	< 삭 제 >
2-257	상5	(4)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①+②+③ = ₩62,960,000	(4)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①+②+③ = ₩62,700,000
2-258	하6	신용카드소득공제 5,960,000	신용카드소득공제 5,700,000
	하2	₩30,960,000	₩30,700,000
	하1	② 종합소득공제 : ~ + Min[₩30,960,000, ~	② 종합소득공제 : ~ + Min[₩30,700,000, ~

2-252 페이지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의 해당내역은 별도로 수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액 : Min[①, ②] = **₩5,100,000**

① 공제대상액 : **a+b+c = ₩5,405,000**

a. (₩3,000,000 + ₩2,000,000)×40% = ₩2,000,000

b. (₩1,000,000 + ₩5,700,000)×30% = ₩2,010,000

c. (₩19,300,000 - ₩40,000,000×25%)×15% = ₩1,395,000

\* 신용카드사용분(₩19,300,000)이 총급여의 25%(₩40,000,000×25% = ₩10,000,000)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한도 : a+b = **₩5,100,000**

a. 일반한도 : Min[₩40,000,000×20%, ₩3,000,000] = ₩3,000,000

b. 추가한도 : Min[₩3,000,000×40%, ₩1,000,000] + Min[₩2,000,000×40%, ₩1,000,000] + Min[₩1,000,000×30%, ₩1,000,000] = **₩2,100,000**

5. 종합소득공제

₩6,500,000 + ₩1,000,000 + ₩800,000 + **₩5,100,000 = ₩13,400,000**

2-257 페이지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의 해당내역은 별도로 수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Min[a, b] = **₩5,700,000**

a. 공제대상액 : ㉠+㉡ = **₩6,400,000**

㉠ (₩11,000,000 + ₩2,000,000)×40% = ₩5,200,000

㉡ (₩3,000,000 + ₩8,000,000 + ₩8,000,000 - ₩60,000,000×25%)×30% = ₩1,200,000

b. 한도 : ㉠+㉡ = **₩5,700,000**

㉠ 일반한도 : Min[₩60,000,000×20%, ₩3,000,000] = ₩3,000,000

㉡ 추가한도 : Min[₩11,000,000×40%, ₩1,000,000] + Min[₩2,000,000×40%, ₩1,000,000] + Min[₩3,000,000×30%, ₩1,000,000] = **₩2,700,000**

## 2. 월세세액공제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275	상12	<p>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12%(또는 15%*)<b>개정</b></p> <p>* 15% 적용대상자<b>개정</b></p> <p>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p> <p>② 사업소득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자</p> <p><b>개정</b> 2022년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되었다.</p>	<p>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10%(또는 12%*)</p> <p>* 12% 적용대상자</p> <p>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p> <p>② 사업소득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자</p>
2-302	하3	<p>~ 초과하므로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p> <p>월세세액공제: <math>\text{Min}[\text{W}8,000,000, \text{W}7,500,000] \times 12\% = \text{W}900,000</math></p>	<p>~ 초과하므로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p> <p>월세세액공제: <math>\text{Min}[\text{W}8,000,000, \text{W}7,500,000] \times 10\% = \text{W}750,000</math></p>
2-304	하6	<p>(5) 월세세액공제: <math>\sim \times 12\% = \text{W}900,000</math></p> <p>* 종합소득금액이 ~ 초과하므로 세액공제율은 12%를 적용한다.</p> <p>(6) 세액공제 합계: <math>\sim = \text{W}3,615,000</math></p> <p>3. 종합소득결정세액</p> <p><math>\text{W}6,780,000 - \text{W}3,615,000 = \text{W}3,165,000</math></p>	<p>(5) 월세세액공제: <math>\sim \times 10\% = \text{W}750,000</math></p> <p>* 종합소득금액이 ~ 초과하므로 세액공제율은 10%를 적용한다.</p> <p>(6) 세액공제 합계: <math>\sim = \text{W}3,405,000</math></p> <p>3. 종합소득결정세액</p> <p><math>\text{W}6,780,000 - \text{W}3,405,000 = \text{W}3,375,000</math></p>
2-338	상9	<p>(5) 월세세액공제: <math>\sim \times 12\% = \text{W}900,000</math></p> <p>* 총급여가 ~ 초과하므로 세액공제율은 12%를 적용한다.</p> <p>(6)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p> <p>① <math>\sim = \text{W}1,596,000</math></p> <p>a. <math>\sim + \text{W}900,000 = \text{W}1,596,000</math></p>	<p>(5) 월세세액공제: <math>\sim \times 10\% = \text{W}750,000</math></p> <p>* 총급여가 ~ 초과하므로 세액공제율은 10%를 적용한다.</p> <p>(6)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p> <p>① <math>\sim = \text{W}1,446,000</math></p> <p>a. <math>\sim + \text{W}750,000 = \text{W}1,446,000</math></p>
	하1	<p>(7) 세액공제 합계액: <math>\sim = \text{W}3,036,000</math></p>	<p>(7) 세액공제 합계액: <math>\sim = \text{W}2,886,000</math></p>

### 3. 양도소득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427	하12	<p>b.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p>ㄱ.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p> <p>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b.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sup>개정</sup>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2-428	하11	<p>③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건축법의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2주택 보유시에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1주택 보유요건의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p><sup>개정</sup>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폐지되었다.</p>
2-436	하3	<p>(1) 대상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 (미등기양도자산 및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특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은 제외) *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p>	<p>(1) 대상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sup>개정</sup> (미등기양도자산 및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sup>개정</sup>으로서 특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은 제외) *1.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sup>개정</sup></p>
2-444	상4	< 추 가 >	<p>*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sup>개정</sup></p>
2-480	상15	<p>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400,000,000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p>	<p>장기보유특별공제 (88,000,000)* 양도소득금액 ₩312,000,000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00,000,000×22%(보유기간 11년)=₩88,000,000</p>